

#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 주요내용

-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(**Positive List System, PLS**)란?
-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, 잔류허용 기준(MRL, Maximum Residue Limits)을 설정하여,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(0.01mg/kg, ppm)으로 관리하는 제도

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	PLS 시행 전(현재)	PLS 시행 후
설정	각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	
미설정	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잠정기준 적용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	잠정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일률기준(0.01mg/kg, ppm) 적용 <small>* 0.01mg/kg(ppm) 설정근거 : 기기분석으로 검출 가능한 최소 농도(EU), 독성학적으로 인체의 위해성이 없는 수준(일본), 해외에서 일률기준으로 이미 통용</small>

\* (**PLS 적용 예시**)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배추 농약 성분으로 등록된 'Buprofezin'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여 '잔류농약 조사' 결과 0.03ppm 검출 시 종전에는 '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'인 0.05ppm 이내로 검출되어 '적합' 판정을 받지만, **PLS 시행 후에는 0.01ppm이 적용되어 '부적합'으로 판정 받게 됨**

- (**목적**)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

- (**관계법령**) 식품위생법 제14조\*에 따른 식품공전

\* 식약처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공전으로 작성

- (**시행시기**) 1차·2차에 나누어 도입 (**시행기관**) 식품의약품안전처

○ 1차 : 견과종실류\* 및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('14.7 행정예고, '16.12 시행)

\* 호두, 땅콩, 아몬드, 참깨, 커피원두, 피스타치오 등

○ 2차 : 나머지 농산물('17.8 행정예고, '19.1.1. 전면 시행)

\* **농약잔류허용기준** : 식품중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상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

\*\* **농약잔류허용기준 결정요인** : 농약의 1일 섭취허용량(ADI), 국민의 평균체중(55kg), 농산물별 1일 섭취량 및 식품섭취량, 적정농약살포기준에서의 수확물중 농약잔류량

= 잔류농약 안전관리 체계(관련법령) =			
구 분	소관부처	근거법령	주요내용
농약등록 및 관리	농진청	농약관리법	• 농약의 등록·유통 관리·안전사용기준 등
농약잔류허용기준	식약처	식품위생법	• 국내·수입 식품(농수산물 및 가공식품)에 대한 기준 규격 제정 및 식품안전성검사, 위생시설 관리
농산물안전관리	식약처 (농식품부)	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	• 국내농산물의 안전성 허용기준초과여부 조사